

문답식으로 풀어본 세법

(축산업분야)

문 1. 세법상 축산업이란?

답 낙농, 양계, 조류사육, 소, 말, 돼지, 양, 염소, 토끼, 친칠라, 밍크, 사슴 기타 특수동물생산업과 누에기르기 및 꿀벌치기업 등임.

(所得稅法 施行令 第29條)

*가금부화(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과세), 인공수정, 거세, 털깎이, 병아리감별 등 축산 서비스업은 축산업에 포함됨.

(基本通則 2-4-4...20)

문 2. 세법상 축산업의 비과세 범위는?

답 • 다음 별표3(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 2 별표3, 이하 "별표3"이라 칭함)에 계기하는 각 가축별 규모이하의 축산에서 얻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별표3이외 기타 농가부업적 축산에서 얻는 소득의 합계 금액이 연 240만원 이하인 소득.

(所得稅法 施行令 第6조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 2 별표 3

가축별	규 모	비 고
젖 소	20마리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소	30마리	
돼 지	200마리	
산 양	300마리	
면 양	300마리	
토 끼	5,000마리	
닭	10,000마리	
오 리	10,000마리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함.

문 3. 농가부업소득이란?

답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고공품 기타의 소득을 말함.

단만,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금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과세하며, 별표3에 계기한 가축별 규모 이하의 사육에 대하여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함.

(所得稅法 施行令 第6조의 2)

문 4. 농민이 여러 종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각 가축별로 그 규모가 별표3의 가축별 규모 이하인 때 과세해당 여부.

예 젖소 15두, 돼지 150두, 닭 9,000수를 사육하여 소득금액이 1천만원일 때.

답 농가부업적 축산의 범위이내이므로 비과세임.
(基本通則 1-2-2...5)

*농가부업적 축산에서 얻는 소득은 소득금액에 제한없이 사육두수가 별표3의 범위 이내이면 비과세임.

문 5. 농민이 여러 종류의 가축을 사육할 경우 어느 한 종류의 가축이 별표3의 가축별 규모를 초과할 때 과세해당 여부.

예 젖소 25두, 돼지 150두, 닭 9,000수일 때.

답 한 종류의 가축(젖소 25두)이 별표3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농가부업적 축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체소득에 대하여 과세됨.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별표3에 규정된 축산이

외의 연 240만원까지의 다른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됨. (基本通則 1-2-2...5)

㉟ 6. 농민이 별표3에 규정한 축산소득 이외에 다른 축산소득이 연 250만원인 경우 과세 여부.

㉠ 풀벌사육소득 250만원, 젖소 15두, 닭 9,000수

답 ① 풀벌사육소득에 대한 과세
250만원-240만원=10만원...과세소득
② 젖소 15두, 닭 9,000수는 비과세.
(소득 1264-929 83.3 21)

㉟ 7. 근로소득자가 가족과 함께 3,000평의 전답에 농사를 지으며 농가부업적 축산을 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근로소득 월200,000원, 젖소 15두, 돼지 150두.

답 별표3에 제기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에 대하여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 22601-3118. 85.10.19)

㉟ 8. 농사 없아(어떠한 다른 직업도 없이) 전업으로 젖소 15두, 돼지 150두를 사육하는 경우 과세 여부

답 별표3에 제기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에 대하여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 22601-2645. 85.9.2)

㉟ 9. 근로소득자가 별표3에 제기한 축산소득 이외에 다른 축산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 여부.

㉠ 근로소득 월 200,000원, 사슴 2마리, 풀벌 사육소득 200만원

답 축산소득을 전부 과세함.
농민이 아니므로 농가부업적 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금액 240만원을 공제치 아니함.

㉟ 10. 농민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농가부업의 판정기준은?

㉠ 甲乙丙 3인 공동출자, 닭 21,000수 사육.

답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사육두수)에 따라 판정함.

(甲) 21,000수× $\frac{1}{3}$ =7,000수 } 별표3에 제기하는
(乙) 21,000수× $\frac{1}{3}$ =7,000수 } 가축규모별기준에
(丙) 21,000수× $\frac{1}{3}$ =7,000수 } 미달되므로 농가부업적 축산에 해당됨.

(基本通則 1-2-2...5)

㉟ 11. 별표3에 의하면 육성우의 경우는 2마리를 1마리의 성축으로 본다고 되어있는 바 닭, 돼지 등의 병아리, 새끼돼지도 이에 준하여 어린가축 2마리를 1마리의 성축으로 보는지?

답 별표3에 제기하는 농가부업적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린가축은 제외되는 것이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만 2마리를 1마리의 성축으로 간주하는 것임. (소득 22601-2979. 86.10.6)

㉟ 12. 농가부업적인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조치를 받지 못하는가?

답 농가부업적 축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농가부업적인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음.

(기본통칙 1-2-2...5 및 소득 22601-3118. 85.10.19)

㉟ 13. 농민이 부업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운전수와 함께 농업용 기계장비(트랙터 등)를 임대하여 주고 받는 소득이 과세되는지?

답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농가부업적 소득(별표3에 제기하는 농가부업적 축산소득 제외)의 합계금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 1264-2800. 84.9.3)

㉟ 14.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이 과세대상 수입금액인가?

답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소득세 기본통칙 2-4-3...20)

문 15. 농민이 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 냉동가공한 후 脂肉으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

답 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에 대한 판매수입금액 상당액은 축산업으로 과세하고,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 냉동가공료에 상당하는수입금액은 제조업으로 과세함.

(基本通則 2-4-3...20)

문 16.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답 축산업(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계기한 축산업과 축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부화업)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감면 규제법 제37조)

문 17.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던 내국인이 새로이 별개의 사업장에 축산업을 개시한 경우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답 기존사업장과 구분, 격리하는 경우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각각 별도로 적용함. 단, 이 경우 종목만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새로운 축산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조감법 기본통칙 2-10-1...37)

문 18.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개시 시기는 언제인가?

답 소득공제의 적용개시 시기는 이월 결산금액 관계없이 당해 축산업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사업년도부터임.

(법인 126421-3471.83.10.11)

문 19.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답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으로서 별표 1 (아래표 참조)에 해당하는 사육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구비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됨.

(별표 1에 규정된 토지면적 범위내에서 비과세)

① 별표 1에 계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러나 구목장의 양도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위와 같은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때에 한한다.

②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이것은 축산장려의 정책적 견지에서 마련한 감면조치이다.

※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적범위 (별표 1)

사 업 별	사육성축두수	면적(토지면적범위)
한우, 육용우사육사업	20두	두당 1,150㎡
유우 사육사업	20두	두당 300㎡
양, 사슴사육사업	200두	두당 230㎡
돼지 사육사업	100두	두당 13㎡
토끼(친칠라 및 밍크포함) 사육사업	500수	두당 3㎡
가금사육사업(총계장에 설치된 부화장 포함)	1,000수	두당 3㎡

(주) 사육두수는 매월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규칙 9④).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3호)

문 20. 소득세 확정신고를 불이행하고, 이에 따른 정부조사결정이 없을 경우에도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가?

답 동일사업자가 5년이상 계속하여 목장을 소유하고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5년이상 경영한 목장으로 봄. (양도소득세법 기본통칙 1-2-64...6)

문 21.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폐업하고, 전업하고 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답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임.
(양도소득편 기본통칙 1-2-64...6)

문 22. 5년이상 경영한 기존의 목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목장의 경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신·구목장을 같이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답 5년 이상 경영한 기존목장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5년 미만의 신규취득목장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재무부직세 1264-2227.79.7.7)

문 23. 목장을 임차하여 경영한 경우 동목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답 토지소유자와 목장경영자가 상이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소득 1264-3676.81.10.20)

문 24 5년 이상 경영한 구목장을 이전하여 신목장을 경영할 시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도 양도세가 감면되는지?

답 가축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소득 1264-2949.83.8.29)

문 25.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절차는?

답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편 기본통칙 1-2-65...6)

금년에도 파리, 바퀴 박멸엔 쿠팍스입니다.

퍼메스린제제

쿠팍스

같은 퍼메스린제제라도 이성질체의 비율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쿠팍스는 시스(cis) 25%와 트랜스(Trans) 75%로된 퍼메스린과 특수부형제를 사용하여 제조되었기 때문에, 효과, 지속성, 안전성이 탁월합니다.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1031-29 ☎ 582-9181~5
본사·공장 : 경기도용인군기흥읍구갈리227-5 ☎ 수원⑧3423/4